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13-28 |
|----------|-------|

제출년월일 : 2013. 4.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규정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 우리 구 자활기금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른 기금운용관의 직위를 조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법률용어의 순화를 반영하여 조문상의 일부 표현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안 제4조의2 신설)

나. 위원의 이해충돌가능성 방지 규정 마련(안 제5조제4항 신설)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용 규정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

다. 기금운용관의 직위 하향 조정(안 제12조제2항)

-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기금운용관의 직위를 주민생활국장에서 복지행정과장으로 조정

라. 자활기금의 용어 정비(안 전반)

- 보건복지부 「자활기금 활성화 추진계획」에 따른 기금 조성 각 호 용어 및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자활공동체->자활기업) 정비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전반)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3)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 4) 「2012부패영향평가지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규제여부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2013. 3. 14 ~ 4. 3)결과 : 제출의견 없음

나.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

| 관련조문 | 평가기준 | 검토 결과 | 조치 결과 |
|----------------------|-------------|------------------|-------|
| • 제5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 이해충돌 가능성 | 이해충돌 방지장치 마련(권고) | 반영 |
| • 제7조(지원신청 등) |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 재정지원기준의 명확화 | 반영 |
| • 제9조(이차보전) |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 재정지원기준의 명확화 | 반영 |

다. 가정복지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 : 원안동의

| 관련조문 | 평가기준 | 검토 결과 | 조치 결과 |
|-------------|------------------------------|--|-------|
| • 제6조(지원대상) | • 자격요건 등 성별 특성 관련 조항 - | • 법적 자격요건으로 별도의 성별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에 원안 동의 | 해당 없음 |

라. 2013년 제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2013.4.18)

마.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으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을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운용 및 관리에 관한”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금”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를 “서울특별시”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구 이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제2조제4호 중 “기금으로 부터의”를 “기금으로부터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제2조제6호 중 “기금운용수익금 및 기타”를 “기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용도에 사용한다”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자활공동체가”를 “자활기업이”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15조제1항제1호”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의2 중 “자활공동

체”를 “자활기업”으로, “사업 자금”을 “사업자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2의3. 법 제18조의2에 따라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수급자”라 한다)을 채용하는 기업에 사업자금 대여 제3조제3호 중 “영 제37조”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를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로, “신용보증하는데 소요되는”을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은 채무 제3조제4호나목 중 “대출받은”을 “대여받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수급자 및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제3조제6호 중 “밖에”를 “밖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로,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를 “필요하다고”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구금고”를 “구 금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구 금고에 예치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구청장은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 조

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의 제목“(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한 다음”을 “관한”으로, “둔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금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이 안건으로 상정하는 사항

제5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제2조”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의 규정”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이 있으면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구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구에 소재하는 기관·단체중”을 “기금의 지원대상은 구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기관·단체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급자 및 영 제3조의2의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제6조제4호 중 “사회복지서비스”를 “사회복지 서비스”로 한다.

제7조 제1항 중 “개인, 기관, 단체”를 “개인·기관·단체”로 하고,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을 “구청장에게 신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미리 구청장에게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을 “미리 구청장에게 승인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8조의 제목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를 “(사업자금 대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활공동체”를 각각 “자활기업”으로,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내”를 “자활기업당 7천만원의 범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자활공동체는”을 “자활기업은”으로, “10년내”를 “10년 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가”를 “대여받은 자활기업이”로, “호의 1”을 “호의 어느 하나”로, “규정에”를 “규정에도”로, “대여 받은”을 각각 “대여받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해체될”을 “해체된”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을 “대여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로, “6월”을 “6개월”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용도변경의 승인없이”를 “용도의 변경 승인 없이”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자활공동체가”를 “자활기업이”로, “이자와”를 “이자율과”로, “이자간에”를 “이자율 간에”로, “5퍼센트의 범위안”을 “연이율 5퍼센트의 범위 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자활공동체가”를 “자활기업이”로, “취하여야”를 “하여야”로 한다.

제10조 중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를 “비용은 「지역신용보

증재단법」 제27조”로 한다.

제11조 제1항 중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한다.

제12조 제1항 중 “구소속공무원”을 “구 소속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민생활국장”을 “복지행정과장”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 서식”을 “기금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서식”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재정법」 중”을 “「지방재정법」 중”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를 “구청장은 회계연도 시작 전에”로, “출납폐쇄후”를 “출납폐쇄 후”로,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기금결산보고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당해연도”를 “해당연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을 “회계연도마다”로, “서울특별시구의 회”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기금의 관리”를 “기금관리”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금의 관리”를 “기금관리”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국민기초생활 보장법</u>」(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 및 「<u>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u>」(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u>자활기금</u>(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국가 및 <u>서울특별시</u>(이하 “시”라 한다) 보조금 및 교부금 3. <u>구이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u> 4. <u>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u> 5. <u>부양의무자 및 부정수급자로부터의 보장비용 징수금</u> 6. <u>사업자금 대여 등에 따른 기금 운용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u> | <p>제1조(목적) ----- 「<u>국민기초생활 보장법</u>」 ----- 「<u>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u>」 ----- ----- <u>자활기금을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에 관한</u>----- -----.</p> <p>제2조(기금의 조성) <u>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u>(이하 “기금”이라 한다)-----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 <u>서울특별시</u> ----- ----- 3. <u>구 이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u> 4. ----- <u>기금으로부터의</u> ----- 5. <u>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u> 6. ----- <u>기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u> ----- |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2의2.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공동체 자활을 위한 사업 자금 용자

2의3.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영 제37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 자활지원계획에 따른 자활지원 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 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제3조(기금의 용도)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기업이 -----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2의2. -----
---- 자활기업 ----- 사업자금 ----

2의3. 법 제18조의2에 따라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수급자” 라 한다)을 채용하는 기업에 사업자금 대여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37조-----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

나. 수급자가 대출받은 생업자금
채무

5.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단, 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이
하에 한한다.)

6. 그 밖에 저소득주민의 자활지
원에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마
포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생
략)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
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구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
용하여야 한다.

③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구금고에의 예치

2. (생략)

<신설>

----- 신용보증하
는 경우에 드는-----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은 채무

나. ----- 대여받은-----

5. 수급자 및 법 제7조제3항에 따
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6. ---- 밖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
다)이 -----
필요하다고 -----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현행
과 같음)

② -----
----- 구금고-

-----.

③ -----
-----.

1. 구금고에 예치

2. (현행과 같음)

제4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지방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
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사
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
다.

1. 기금운용계획
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
3. 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 변
 경
4.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
 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신 설>

② 위원회의 구성은 「서울특별시

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
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구청장은 존속
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운용) ① ----- 관한 ---

----- 설
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
의한다.

1.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금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구청장이 안전으로 상정
 하는 사항

② ----- 「서울특별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대신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 등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신 설>

제6조(지원대상)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구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구에 소재하는 기관·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공동체

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제2조

③ -----

-----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

④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이 있으면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구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기관·단체 중 -----

1. 수급자 및 영 제3조의2의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생략)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및 단체

5. (생략)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제6조에 따른 개인, 기관, 단체 등이 제3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에게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 및 변경신청서의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 제3조제2호에 따른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3. (현행과 같음)

4. -----

----- 사회복지 서비스 -----

5. (현행과 같음)

제7조(지원신청 등) ① -----
- 개인·기관·단체 -----

----- 구청장에게 신청 -----
-----.

② -----

----- 미리 -----
구청장에게 승인을 -----.

③ (삭제)

제8조(사업자금 대여) ① -----
----- 자활 -----
기업 -----
----- 자활기업당 7천만원의 범위 -----

결정한다.

②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10년내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 및 연체이자는 매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확정, 시달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에 규정된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될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제2항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

--.

② ----- 자활기업은 -----
----- 10년 내 -----

③ -----
----- 보건복지부장관-----

④ ----- 대여 받은 자활기업이 ----- 호의 어느 하나-----
규정에도 ----- 대여 받은-----

1. ----- 해체된 --

2. ----- 대여 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
6개월 -----

3. -----
- 용도의 변경 승인 없이 -----

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9조(이차보전) ①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
출받은 경우 그 이자와 제8조제3
항에 따른 이자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이
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
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
전을 받은 자활공동체가 제8조제4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신용보증) 제3조제4호에 따
른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11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
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
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생략)

제9조(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

-----이자율과-----
-----이자율 간에-----
-----연이율 5퍼센트의 범위 안-----
-----.

② -----
- 자활기업-----
-----.

③ -----
----- 자활기업이 -----

----- 하여야 -----.

제10조(신용보증) -----
-----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

-----.

제11조(업무의 위탁) ① -----
자활기업-----

-----.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구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주민생활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 관련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 서식의 기금관리 대장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기금출납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예치 상황과 그 사용내역 등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④ 「지방재정법」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 ① -----

----- 구 소속공무원 -----

② ----- 복
지행정과장-----

-----.

③ -----
기금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서
식----- 별지 제2
호서식-----

-----.

④ 「지방재정법」 중 -----

-----.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 시작 전에 -----
----- 출
납폐쇄 후 ----- 기금결산
보고서-----.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략)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생략)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수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세계현금의 수입·지출, 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외의 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마포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② -----

-----.

1. (현행과 같음)

2. 해당연도-----

3. (현행과 같음)

③ -----

----- 회계연도마다 -----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
-----.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관리-----

----- 따른다.

② ----- 기금관리-----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해당
 -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

4. 작성자

| | |
|--------|-----------------|
| 작성자 이름 | 주민생활국 복지행정과 김미자 |
| 연 락 처 | 02-3153-8806 |